

임예진 관세법(2023년 대비) 개정사항 (4)

- 관세법 시행령 2023. 2. 28. 개정 [시행 2023. 2. 28.]

* 공지사항

2023년 2월 28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2월 28일 시행 : 1차, 2차 모두 적용.

4월 1일 시행 : 2차에만 적용됨. (1차 시험에는 해당 없음)

7월 1일 시행 : 1차, 2차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개정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차 p.20 / 2차 p.22 : 1. (2)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 (신설)

(2) 공시송달 사유 및 효력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상기 (1)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①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②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의 (2) 관련 시행령

공시송달 [영 제2조의2]

상기 1. (2)의 ③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 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 p.53 / 2차 p.55 : 3. (2) 관련 시행령 박스 ③의 ㉞ 수정 (단서 신설)

개정 전

- ㉞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개정 후

- ㉞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이 호에서 “품목번호”라 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 공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용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수입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분화된 번호에 해당할 것

1차 p.74 : 3. (2)의 ① 수정

- 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하기 (3) 또는 (5)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1차 p.109 / 2차 p.81 : 7. (2) 관련 시행령 제목, 본문 수정

7.의 (2) 관련 시행령

부정한 행위 [영 제39조 제4항]

상기 7.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이종송품장·이종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 ③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 ④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개정 전	개정 후
부당한 방법	부정한 행위

1차 p.152 / 2차 p.123 : 2. (1) 수정

(1) 수출자의 서면제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상기 1. (1)의 규정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상기 1. (2)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1차 p.221 / 2차 p.195 : 1. (2) 관련 시행령 박스 ⑤, ⑥, ⑦ 신설

1.의 (2) 관련 시행령

결정통지 기간 [영 제106조 제4항]

상기 1.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 ② 보정기간
- ③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 ④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 ⑤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 ⑥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 ⑦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1차 p.267 / 2차 p.242 : 3. ③ 수정

개정 전

③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개정 후

③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1차 p.294 / 2차 p.270 : 1. (1) 관련 시행령 박스 2. 단서 수정

2. 담보 제공시기

상기 (1)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차 p.287, 288 : 6. (1)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 (신설)

[* 4.1. 시행되는 규정으로 1차 시험은 해당 없음]

6. (1)의 ⑤ 관련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영 제141조의2 제1항]

상기 6. (1) ⑤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①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②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④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⑥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⑦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⑧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⑩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⑪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6. (1)의 ⑤ 관련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영 제141조의2 제2항]

상기 6. (1) ⑤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① 상기 6. (1) ⑤의 ㉠ 및 ㉡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의 조사·심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 ② 상기 6. (1) ⑤의 ㉠ 및 ㉡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 ③ 그 밖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가 필요하다 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차 p.287, 288 : 6. (2)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 (신설)

[* 4.1. 시행되는 규정으로 1차 시험은 해당 없음]

6. (2) 관련 시행령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영 제141조의2 제3항]

세관공무원이 상기 6. (2)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2차 p.287, 288 : 6. (3)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 (신설)

[* 4.1. 시행되는 규정으로 1차 시험은 해당 없음]

6. (3) 관련 시행령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영 제141조의3 제1항]

상기 6. (3)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 ②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 ③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지원 등 사업명
- ④ 당사자의 동의

2차 p.287, 288 : 6. (7)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 (신설)

[* 4.1. 시행되는 규정으로 1차 시험은 해당 없음]

6. (7) 관련 시행령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영 제141조의4]

① 과세정보공유자(상기 6. (1)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5)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기 (7)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 ㉡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 ㉢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관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상기 ①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상기 ②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차 p.325 / 2차 p.300 : 1. (2)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 (신설)

1.의 (2) 관련 시행령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영 제143조 제2항]

납세의무자가 상기 1. (2)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하
기 1. (3)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留保)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②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과세전 통지 생략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1차 p.431 / 2차 p.403 : 6. (3) 수정

(3)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판매장 특허기간 [영 제192조]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1차 p.488 / 2차 p.463 : 1. (4) 관련 시행령 수정

1.의 (4) 관련 시행령

매각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220조]

상기 1.의 (4)에 따라야 세관장이 장차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의 기
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
다)로 한다.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영 제221조]

- ① 세관장은 상기 1. (4)에 따라 장차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
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상기 ①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을	매각을

1차 p.494 / 2차 p.469 : 7. (3)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 (신설)

7.의 (3) 관련 시행령

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영 제225조의2]

- ① 상기 7.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 ② ①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상기 4.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

1차 p.541 / 2차 p.511 : 2. (3)부터 (7) 관련 시행령 박스에서 2. 3. 수정

2. 통보

세관장은 상기 2. (5) 및 (7)에 따라 통관보류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 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제6호(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 등의 사실 및 다음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 ㉠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 ㉡ 물품발송인
 - ㉢ 물품수신인
- ② 통관보류 등을 한 물품의 성질·상태 및 수량
- ③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통관보류 등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세관장은 통관보류 등을 요청한 자가 상기 2.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 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 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1차 p.540 / 2차 p.510 : 2.의 (5) 관련 시행령 박스 ① 수정

- 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제6호(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상기 2. (5)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차 p.542 / 2차 p.512 : 9. ①, ② 수정

(9)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영 제242조]

-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기 2. (3)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상기 2. (5)에 따라 통관보류 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1차 p.585 / 2차 p.553 : 5-4. 관련 시행령 박스 ④ 수정

- ④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29조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1차 p.670 / 2차 p.631 : 9. (1)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신설)

9.의 (1) 관련 시행령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의 제한의 예외 [영 제283조의2 제1항]

상기 9.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 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 ②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 ⑤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차 p.670 / 2차 p.631 : 9. (2)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신설)

9.의 (2) 관련 시행령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의 예외 [영 제283조의2 제2항]

상기 9.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p.670 / 2차 p.631 : 9. (3)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신설)

9.의 (3) 관련 시행령

체납한 횡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영 제283조의3]

- ① 상기 9. (3)의 체납한 횡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 ② 상기 9. (3)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관세 및 내국세등
 - ㉡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 ㉢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

2차 p.625 : 3. (10) 관련 시행령 박스 추가 (신설)

[* 4.1. 시행되는 규정으로 1차 시험은 해당 없음]

3.의 (10) 관련 시행령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영 제276조의2]

- ① 상기 3. (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 ㉠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시설일 것
 - ㉡ 관세정책의 평가·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
- ② 상기 3. (10) ⑤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 ㉤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 ③ 상기 3.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
 - ㉡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
 - ㉢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기간 및 이용자
- ④ ③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 ⑤ 관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④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 ㉠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전에 상기 3. (11)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⑥ ③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